#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69호

##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제정이유

○ 최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시민 참여와 관계 기관 협력 등을 통해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촬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실태조사 시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명시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사업 지원 및 시민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4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kimhk7@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박해정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 85 |
|---|---|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의 원 : 박해정・감규상・강길순・강창석・곽은정
구점득・권순재・김수민・김원일・문순규
박영주・박찬열・박현재・백승규・변보미
서명일・성보빈・이우완・이원주・전태완
정순욱・지상록・진형익・하경석 의원(24명)

## 1. 제안이유

○ 최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시민 참여와 관계 기관 협력 등을 통해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촬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실태조사 시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명시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사업 지원 및 시민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나. 샤워실

   다. 탈의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육안 및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
2. 불법촬영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점검할 것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면·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그에 따른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추진 및 위탁)**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사업

2.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운영 사업

3. 제12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확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참여 활성화 등)** ① 시장은 민관협력을 통한 불법촬영 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③ 시민감시단의 구성·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에 대한 효과적인 예

방을 위하여 경찰관서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감시단,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에게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사용 등 점검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과 이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필요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심스크린”이란 공중화장실등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에 있는 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6조(공중화장실의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

4.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육안점검

제1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빌려줄 수 있다.

제18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해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